

## 규정령 초안

###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클로로에틸렌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 부유 유독물질 통제 조치에 대한 제안 수정안

[주: 제93109조는 수정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수정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1부는 제안된 새 본문이고, 2부는 제안 삭제된 본문이다. 삭제선과 밑줄은 캘리포니아제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표제2, 제8조에 승인된 대로 생략되었다.]

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17, 제93109조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읽는다:

제93109조.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 부유 유독물질 통제 조치(Airborne Toxic Control Measure for Emissions of Toxic Air Contaminants from Dry Cleaning Operations).

#### (a) 목적.

본 통제 조치의 목적은 드라이클리닝 작업에서 발생하는 퍼클로로에틸렌(퍼크)을 비롯한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toxic air contaminant, TAC)의 방출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물질의 방출을 감축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특히 드라이클리닝 시설 인근에 살거나 일하는 캘리포니아인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게 된다.

#### (b) 적용 대상.

본 조항은 퍼크 또는 확인된 TAC를 함유한 일체의 솔벤트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캘리포니아에서 소유하거나, 가동하거나,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적용된다.

#### (c) 용어 정의.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6절 제1부 제1장 제39010조부터 시작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추가 사항과 더불어 적용된다.

- (1) “부가한 이차 제어 기계”(Add-on secondary control machine)란 복수의 기계 제조사와 모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조 시스템으로 고안되었거나 제공되는 이차 제어 시스템이 있는 폐루프형 기계를 의미한다.
- (2) “흡착 카트리리지 필터”(Adsorptive cartridge filter)란 필터 매질로 구조토, 활성탄 또는 활성점토를 함유하는 대체 가능한 카트리지를 의미한다.
- (3) “탄소 흡착기”(Carbon adsorber)란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발생하는 배기 가스 유입구, 흡착제로서 고정된 대상(臺床)이나 카트리리지 또는 통 형태의 활성탄, 배기 가스 유출구 및 포화된 흡착제를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는 공기정화 장치를 의미한다.

- (4) “카트리리지 필터”(Cartridge filter)란 다음 중 하나, 즉 종이, 활성탄, 점토, 종이와 점토 또는 종이와 활성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재료를 필터 매질로 함유하는, 교체 가능한 카트리리지 필터를 의미한다. 카트리리지 필터는 다음을 포함 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표준 필터, 분리 필터, “점보” 필터 및 모든 탄소 폴리싱 필터
- (5) “폐루프형 기계”(Closed-loop machine)란 세탁, 탈수, 건조 등이 동일한 단일 기기 안에서 모두 수행(‘드라이 투 드라이’로도 알려짐)되고, 건조하는 동안 퍼크를 함유한 증기를 송풍구 없는 이차 제어 시스템을 갖춘 또는 갖추지 않은 일차 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재순환시키는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의미한다. 폐루프형 기계는 건조 사이클이 완료된 후 기계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만 배기가 이탈 제어 시스템을 통해 주위 공기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 (6) “주거공존”(Co-residential)이란 ‘벽, 바닥, 천장 등을 주거와 공유하는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는’ 이라는 의미이다.
- (7) “개조한 기계”(Converted machine)란 통기 계단을 제거하고, 일차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건조하는 동안 퍼크가 함유된 증기를 통풍구 없이 대기 중으로 또는 작업실로 재순환시킴으로써 폐루프형 기계가 되게끔 변형시킨 기존의 통풍구 있는 기계를 의미한다. 개조한 기계는 건조 사이클이 완료된 후 기계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만 배기가 이탈 제어 시스템을 통해 주위 공기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 (8) “냉각”(Cool-down)이란 가열 장치의 작동이 해제되고 냉각 콘덴서가 드럼 안의 퍼크 농도를 낮추기 위해 드럼을 통해 재순환하는 공기의 온도를 계속 낮출 때 시작되는 건조 사이클의 일부를 의미한다.
- (9) “탈착”(Desorption)이란 뜨거운 공기, 스팀, 기타 수단 등을 사용하여 흡착된 솔벤트를 제거해 활성탄 베드 또는 기타 종류의 증기 흡착기를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10) “세척조 작업”(Dip tank operations)이란 드라이클리닝 이외의 목적으로 퍼크를 함유한 물질을 용액, 세척조 또는 드라이클리닝 장비와 동떨어진 용기에 담그는 것을 의미한다.
- (11) “대기국”(大氣局, District)이란 보건안전법 제39025조에 정의된 것과 같은 대기 오염 통제국 또는 대기질 관리국을 의미한다.
- (12) “드럼”(Drum)이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하여 담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회전하는 원통 또는 회전반을 의미한다.

- (13)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이란 퍼크나 기타 솔벤트로 때, 그리스, 페인트, 기타 원치 않는 물질을 세탁물에서 제거할 때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14) “드라이클리닝 장비(Dry cleaning equipment)란 솔벤트를 사용하여 세탁물을 건조 세탁하거나, 이전에 세탁한 세탁물에서 잔존 솔벤트를 제거하는 모든 기계, 장치, 기기 등을 의미한다. 드라이클리닝 장비에는 개조한 기계, 페루프형 기계, 회수기, 건조 캐비닛, 일차 제어 기계, 이차 제어 시스템이 있는 일차 제어 기계, 통합 이차 제어 기계 등이 해당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5) “드라이클리닝 시스템(Dry cleaning system)이란 모든 드라이클리닝 과정과 연관되는 다음의 모든 장비, 장치, 기구 등을 의미한다: 드라이클리닝 장비, 필터 또는 정화 시스템, 폐기물 보관, 처리, 폐기 시스템, 솔벤트 공급 시스템, 세척조, 펌프, 가스켓, 배관, 덕트, 부착물, 밸브, 퍼크나 기타 TAC 증기를 전달하는 플랜지, 제어 시스템.
- (16) “건조 캐비닛(Drying cabinet)이란 이전에 퍼크 또는 TAC를 함유한 또 다른 솔벤트로 세탁한 세탁물을 담고, 달리 건조할 경우 건조시의 열과 요동하는 동작에 의해 손상될 세탁물을 건조할 때만 사용하는 수납기를 의미한다.
- (17) “건조 사이클(Drying cycle)이란 세탁 및 탈수 후 세탁물에 남아 있는 퍼크를 능동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페루프형 기계의 경우, 가열 사이클 다음에 냉각이 따르며 가열 사이클은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여 냉각 시점 너머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건조 사이클은 가열 코일이 작동할 때 시작되어서 개조한 기계 또는 일차 제어 기계의 경우, 기계가 드럼의 회전을 멈추는 때 또는 이차 제어 기계의 경우 흡착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다.
- (18) “강화된 환기 시스템(Enhanced ventilation system)이란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탈 배기를 포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환기 시스템을 의미한다. 강화된 환기 시스템의 종류에는 국소 환기 시스템(local ventilation system), 증기 부분 차단실(partial vapor barrier room), 증기 완전 차단실(full vapor barrier room) 등이 있다.
- (19) “환경 훈련 프로그램(Environmental training program)이란 캘리포니아제규정 집 표제17, 제93110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드라이클리닝 작업에 대하여 공기자원 협의회(Air Resources Board)가 승인한 환경 훈련 프로그램의 최초 과정 또는 재수강 과정을 의미한다.
- (20) “공기자원협의회 집행관(Executive Officer of the Air Resources Board)이란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의회 집행관 또는 그 대리인을 의미한다.
- (21) “기존 시설(Existing facility)이란 2007년 7월 1일 전에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가동한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 (22) “시설”(Facility)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소유 또는 가동하고, 동일한 자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동일한 자에 의하여 가동되며, 동일한 구획 또는 인접한 구획들에 위치한 법적 실체.
- (23) “이탈 제어 시스템”(Fugitive control system)이란 기계의 문, 버튼, 린트받이, 증류기 또는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의도적으로 나 있는 열린 공간 등에서 나오는 이탈 퍼크 증기를 수집하여 그 증기가 대기 중으로 나기 전에 다량의 퍼크를 감축하는 장치로 유도되도록 경로를 돌려주는 장치 또는 기기를 의미한다.
- (24) “상근 종업원”(Full-time employee)이란 드라이클리닝 시설에 고용되어 어느 때이든지 90일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최소한 3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 (25) “증기 완전 차단실”(Full vapor barrier room)이란 폐루프형 기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고, 확산되는 솔벤트 증기를 견디는 재질로 지어진 방을 의미한다. 이탈 배기는 건물 위의 송풍구로 배출된다. 시방서에 의하면, 통풍구 팬은 증기 완전 차단실 내에 또는 기계 뒤편 천장 부근에, 아니면 시설 밖의 벽이나 지붕에 설치해 된다. 팬은 분당 최소 성능 1,000 입방 피트로 고압(1~3인치의 물) 설계되어야 하고, 주거공존 시설에서 계속 가동(하루 24시간, 일년 365일)하고 있어야 하며, 비주거공존 시설에서는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가동하거나 유지되는 때는 언제나 계속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 제어 연동장치(control interlock)는 환기 팬이 가동하지 않는 경우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송풍구는 지붕선이나 인접한 지붕 위로 최소한 5피트(약 1.5미터)(권장치는 10피트, 약 3미터) 이상 솟아 있어야 하며, 공기 유입구나 창문에서 최소한 30피트(약 9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배출가스는 수직으로 배기되어야 한다(빗물 덮개 불허). 또한 5분마다 한 번씩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송풍구의 지름은 8~14인치(20~35cm)에 분당 공기 유입률이 1,000~2,500 입방피트이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 (26) “구입한 퍼클로로에틸렌의 갤런”(Gallons of perchloroethylene purchased)이란 특정 기간에 걸쳐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유입되어, 해당 드라이클리닝 장비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시설에 회수되지 않은, 갤런으로 표기되는 퍼크의 양을 의미한다.
- (27) “할로젠 탄화수소 감지기”(Halogenated-hydrocarbon detector)란 25ppmv 이하의 퍼크 증기 농도를 검출하고, 농도의 변화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신호음 또는 볼 수 있는 표시를 발하여 농도 증가를 표시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를 의미한다.
- (28) “통합 이차 제어 기계”(Integral secondary control machine)란 통합 이차 제어 시스템과 더불어 설계되어 제공되는 폐루프형 기계를 의미한다.

- (29) “통합 이차 제어 시스템”(Integral secondary control system)이란 탄소 흡착기를 의미하거나,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일차 제어 시스템의 단일 제조사와 모델로 제품 패키지에 반드시 필요한 일부로 설계되어 제공되는 그에 상응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 (30) “누유”(Liquid leak)란 퍼크를 함유한 액체가 3분에 한 방울 이상 새는 것을 의미한다.
- (31) “국소 환기 시스템”(Local ventilation system)이란 페루프형 기계 근처에 고성능 팬, 배기 송풍구, 물리적 기기/구조(예를 들어 배기 후드, 측판, 유통성 있는 벽 - 수직 플라스틱 스트립) 등이 딸린 환기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솔벤트 증기를 건디는 재질로 설계되어 지어진 시스템을 의미한다. 환기팬은 공기 흐름이 최소한 분당 1,000 입방피트에 포획 속도가 분당 100피트 이상이어야 한다. 팬은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관련 장비가 가동 중일 때는 언제나 작동하여야 한다. 제어 연동장치(control interlock)는 환기팬이 가동하지 않는 경우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단독 건물의 경우 5분마다 한 번씩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벽이나 플라스틱 스트립 커튼은 기계의 전면과 후면에 최소한 3피트 이상 확장되어야 한다. 배기점은 해당 건물이나 인접한 건물 위로 최소한 5피트 이상 솟아야 하며 창문이나 공기 유입구에서 3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 (32) “세탁물”(Materials)이란 의복, 기저귀, 아마포, 섬유, 직물, 러그, 피혁, 기타 드라이클린이 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 (33) “떡 쿡커”(Muck cooker)란 퍼크를 함유한 폐기물에 열을 가하여 퍼크를 휘발시키고 회수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 (34) “신규 시설”(New facility)이란 2007년 7월 1일 전에 퍼크 또는 TAC를 함유한 솔벤트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가동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한다. 시설 이전(移轉)은 본 통제 조치의 목적상 신규 시설로 간주된다.
- (35) “증기 부분 차단실”(Partial vapor barrier room)이란 세탁물을 편리하게 넣고 꺼내기 위하여 전면 패널과 투입구가 노출된, 확산되는 솔벤트 증기를 건디는 재질을 사용하는 페루프형 기계의 후면을 둘러싸고 있는 방을 의미한다. 그 방 안에 있는 고성능 팬은 이탈 증기를 모아 송풍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시킨다. 환기 덕트나 팬의 유입구는 기계의 후면 바로 위 천장 부근 또는 증기 부분 차단실의 후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팬은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관련 장비가 가동 중일 때는 언제나 작동하여야 한다. 제어 연동장치(control interlock)는 환기팬이 가동하지 않는 경우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5분마다 한 번씩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송풍구는 지붕선이나 인접한 지붕 위로 최소한 5피트(약 1.5미터) 이상 솟아 있어야 하며, 공기 유입구나 창문에서 최소한 30피트(약 9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배출가스는 수직으로 배기되어야 한다(빗물 덮개 불허). 송풍구의 지름은 8~14인치(20~35cm)에 분당 공기 유입률이 1,000~2,500 입방피트이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 (36)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퍼크)이란 화학식이 'C<sub>2</sub>Cl<sub>4</sub>'로,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공기정화협의회(ARB)가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로 확인하여 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17 제93000조에 TAC로 분류한 물질을 의미한다.
- (37) “로드당 세탁한 세탁물의 파운드”(Pounds of materials cleaned per load)이란 시설에서 세탁물을 드라이클리닝 하기 전에 저울로 각 로드(로드)의 무게를 달아 기록한 다음 드라이클리닝하여 건조된 세탁물의 로드당 총중량을 파운드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 (38) “일차 제어 기계”(Primary control machine)란 일차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페루프형 기계를 의미한다.
- (39) “일차 제어 시스템”(Primary control system)이란 냉각 콘덴서 또는 대기국이 승인하여 그에 상당하는 페루프형 증기 회수 시스템을 의미한다.
- (40) “회수기”(Reclaimer)란 별도의 드라이클리닝 장비로 전에 세탁한 세탁물에서 잔여 퍼크를 제거하는 데만 사용되는 기계, 장치 또는 기기를 의미한다.
- (41)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Reasonably available)이라는 용어는 환경 훈련 프로그램의 일차 과정에 적용되는 말로, 이 과정은 대기국 경계에서 200마일(약 322km) 이내에서 제공되며, 그러한 모든 과정은 전체적으로 해당 대기국 내 각 시설에서 최소한 한 사람씩을 수용하여 훈련된 작동자로 자격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2) “냉각 콘덴서”(Refrigerated condenser)란 퍼크를 유입해 이슬점 이하로 냉각시켜 회수하는 페루프형 증기 회수 시스템을 의미한다.
- (43) “주거”(Residence)란 동일한 자가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하여 점유하는 모텔이나 호텔 같은 단기 거처가 아닌, 동일한 자가 180일 이상 소유, 임대 또는 점유하는 거주지 또는 주택을 의미한다.
- (44) “이차 제어 시스템”(Secondary control system)이란 건조 사이클이 끝날 때 공기를 재순환시켜 냉각 콘덴서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보다 더 낮게 퍼크의 농도를 낮추는 장치 또는 기기(보통 탄소 흡착기)를 의미한다.

- (45) “셀프서비스 드라이클리닝 기계”(Self-service dry cleaning machine)란 고객이 손수 세탁물을 넣거나, 기계를 작동하거나, 세탁물을 꺼내는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의미한다.
- (46) “민감한 수용체”(Sensitive receptor)란 일체의 주거 및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K-12) 학교, 유아원, 조기교육 기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일체의 교육기관 및 병원, 클리닉, 전문간호 시설, 장기요양 시설, 성인 주간보호 시설, 위탁 양육 가정, 소가족 가정, 보육원, 가족 데이케어 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보건 또는 지역사회 보호를 위하여 보건안전법 제2절 제1200조부터 시작하는 조항에 의하여 인가된 일체의 시설 등을 의미한다.
- (47) “분리기”(Separator)란 물-퍼크 혼합물로부터 퍼크를 회수하는 데 사용하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한다.
- (48) “솔벤트”(Solvent)란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사용되는 물 이외의 액체 물질을 의미한다.
- (49) “건축허가의 실질적 사용”(Substantial use of an authority to construct)이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 (A) 오염원을 구성하는 장비가 구입되었거나 취득되었다. (B) 정지(整地) 작업이나 시설 설치 또는 기초공사 이외의 건축 활동이 시작되어 진행 중이다. 또는 (C) 일년 이내에 오염원의 건축을 완료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 (50) “TAC” 또는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toxic air contaminant)이란 캘리포니아제 규정집 표제13 제93000조와 제93001조에 의하여, 또는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표제42와 부속 연방 시행 규정에 의하여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회가 확인한 대기 오염물질을 의미한다.
- (51) “훈련된 작동자”(Trained operator)란 환경 훈련 프로그램의 일차 과정을 마쳤음을 입증하는 수료증이 있고, 요건대로 재수강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함으로써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소유주, 작동자 또는 종업원을 의미한다.
- (52) “일괄작업 기계”(Transfer machine)란 세탁과 탈수가 한대에서 이루어지고 건조는 별도 기계에서 이루어지는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의 결합을 의미한다.
- (53) “증기 흡착기”(Vapor adsorber)란 퍼크 증기가 유입되어 갇힌 후 탈착되는 활성탄 베드 또는 기타 흡착제를 의미한다.
- (54) “증기 누출”(Vapor leak)이란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간으로부터 퍼크 증기가 방출되어 할로젠 탄화수소 감지기에서 긴급한 발신음이 나든가 신호가 표시되거나 또는 퍼크 농도가 50ppmv를 초과하여 휴대용 분석기에 퍼크로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 (55) “통풍구 있는 기계”(Vented machine)란 세탁, 탈수, 건조가 모두 동일한 단일 기계에서 이루어지고 신선한 공기가 건조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드럼으로 유입

되어 대기 중으로 직접 나가거나 제어 장치를 통해 배기되는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의미한다.

- (56) “폐수처리기”(Wastewater treatment unit)란 열 또는 화학 에너지를 부가하여, 혹은 탄소나 다른 유형의 흡착 필터 시스템 같은 물리적 작용을 통해 퍼크에 오염된 폐수를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 (57) “발수 처리 작업”(Water-repelling operations)이란 세탁물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거나 물기를 튕겨내게 할 목적으로 퍼크를 함유하는 용액으로 세탁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58) “근무일”(Workday)이란 캘리포니아제규정집 노동법 제500조(a)항에 규정된 대로 각 달력일의 같은 시간에 시작하는 연속된 24시간을 의미한다.
- (59) “택지 용도”(Zoned for residential use)란 지역의 토지이용 조례 또는 기타 정부 요구사항으로 주거 목적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d) 금지.** 시설 소유자/작동자는 퍼크 드라이클리닝과 관련하여 다음 종류의 장비 중 어느 것이라도 가동하여서는 안된다

- (1) 회수기 또는 전에 퍼크로 드라이클리닝한 세탁물을 건조시키기 위해 넣어두는 기타 장치를 비롯한 일괄작업 기계
- (2) 통풍구 있는 기계
- (3) 셀프서비스 드라이클리닝 기계
- (4) 2007년 7월 1일 이후 설치하는 일차 제어 또는 개조한 기계
- (5) 건조 캐비닛
- (6) 세척조 작업 및
- (7) 조항 (l)에 의하여 인증 받지 않은 이차 제어 시스템.

**(e) 주거공존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 (1) 주거공존 시설은 퍼크를 함유하는 솔벤트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일절 설치하지 못한다.



- (2) 기존의 주거공존 시설은 현재 설치된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2010년 7월 1일 까지 제거한다.

**(f) 신규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 (1)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무도 퍼크를 사용하는 신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다
  - (A) 시설이 민감한 수용체로부터 최소한 300피트(약 92m) 거리에 위치해 있다.
  - (B) 시설이 택지용도로 되어 있는 지역의 경계 밖에 있으며 경계로부터 최소한 300피트 거리에 위치해 있다.
  - (C) 강화된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 (D) 퍼크를 사용하는 시설은 통합 이차 제어 기계를 설치, 가동, 유지하여야 한다.
- (2)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무도 퍼크 이외의 TAC를 사용하는 신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다.
  - (A) 시설은 대기국의 관련 규칙이나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이용 가능한 최선의 통제기술을 설치, 가동, 유지하여야 한다. 또는
  - (B) 대기국의 관련 규칙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신규 시설의 소유주 또는 작동자는 이 조항에 의하여 해당 TAC와 관련한 위험을 줄이되 퍼크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줄이는 통제 방법을 대기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신규 시설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그 신규 시설이 창업 당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f)(1)(A)항과 (B)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예: 건축허가가 난 후에 용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 (A) 신규 시설이 허가 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허가를 받은 후 일년 이내에 건축허가의 실질적 사용이 있는 경우 또는
  - (B) 신규 시설이 허가 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창업 당시의 기준을 충족시킬 영업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용도 변경이 있기 전에 건축허가의 실질적 사용이 있는 경우.

**(g) 기존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 (1) 퍼크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가동하는 기존의 모든 시설은 통합 이차 제어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7년 7월 1일 전에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가동했고, 통합 이차 제어 기계가 없는 기존 시설의 경우, 준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A) 시설이 민감한 수용체로부터 100피트(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2010년 7월 1일까지, 또는 일차 기계나 개조한 기계 혹은 “부가한” 이차 제어 기계의 사용 연한이 15년째가 되는 해 중에서 더 나중에 오는 시한까지 통합 이차 제어 기계(또는 퍼크를 사용하지 않는 대용물)를 설치하여야 한다.
  - (B) 시설이 민감한 수용체로부터 100피트(3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2009년 7월 1일까지, 또는 일차 기계나 개조한 기계 혹은 “부가한” 이차 제어 기계의 사용 연한이 10년째가 되는 해 중에서 더 나중에 오는 시한까지 통합 이차 제어 기계(또는 퍼크를 사용하지 않는 대용물)를 설치하여야 한다.
  - (C) 전항 (A) 또는 (B)대로 이미 이행하지 않은 기존의 모든 시설은 2016년 7월 1일까지 통합 이차 제어 기계(또는 퍼크를 사용하지 않는 대용물)를 설치하여야 한다.
  - (D) 이차 제어 시스템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기존의 일차 제어 기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통합 이차 제어 기계의 자격이 있다.
    - 1. 기존 일차 제어 기계의 사용 연한이 2007년 7월 1일부로 5년 미만이다.
    - 2. 이차 제어 시스템이 기존 일차 제어 기계의 제조사와 모델에 맞게 설계된 것이다.
    - 3. 이차 제어 시스템은 (I)항의 요구사항에 준하여 입증된 것으로, 각 검사에서 드럼 내 퍼크 농도가 300ppmv 이하를 달성한다. 그리고
    - 4. 이차 제어 시스템은 2008년 7월 1일까지 기계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설치한다.

- (2) 기존의 모든 시설은 강화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A) 민감한 수용체가 2007년 7월 1일 현재, 시설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 2009년 7월 1일까지 또는
  - (B) 민감한 수용체가 2007년 7월 1일 현재, 시설에서 100피트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경우 - 2010년 7월 1일까지

**(h) 통합 이차 제어 시스템의 규격.** 통합 이차 제어 시스템은

- (1) 일차 제어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거나, 일차 제어 시스템과 이 조항의 해당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차 제어 시스템이 결합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2) 배출가스가 대기 중이나 작업실로 방출되어서는 안된다.
- (3) 어떤 형태로든 물이 이차 제어 시스템에 첨가되어 퍼크와 직접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 (4) 시스템 작동 전, 드럼에 찰 것으로 예상되는 퍼크 증기의 최대 양보다 2배 이상 되는 용량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 (5) (1)항의 요구사항에 준하는 입증된 기술을 사용하여 각 검사에서 드럼 내 퍼크 농도가 300ppmv 이하를 달성하여야 한다.

**(i) 양질의 작업 관행 요구.** 다음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아무도 퍼크 드라이클리닝 장비를 가동하여서는 안된다.

- (1) **환경 훈련 요구사항.** 각 시설에는 한 명 이상의 훈련된 작동자가 있어야 한다.
  - (A) 훈련된 작동자는 시설의 소유자, 작동자 또는 또 다른 종업원이어야 하며, 환경 훈련 프로그램의 일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훈련된 작동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일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증거는 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17 제93110조에 준하여 발급된 수료증 원본이어야 한다.
  - (B) 한 사람이 2~3개 시설에서 동시에 훈련된 작동자가 될 수 없다.

- (C) 훈련된 작동자는 시설의 소유주이거나 종업원이어야 하며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가동 중일 때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 (D) 훈련된 작동자 각인은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환경 훈련 프로그램의 재수강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각 재수강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증거는 수료증 원본의 과정 수료일과 강사 서명이어야 한다.
  - (E) 훈련된 작동자가 시설에 한 명뿐인데 사직하는 경우, 시설은
    - 1. 그 훈련된 작동자가 사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기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 2. 후임 훈련된 작동자에 대한 자격인증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i. 대기국은 환경 훈련 프로그램의 일차 과정을 적절히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과정이 적절히 제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후임 훈련된 작동자에 대한 자격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2) *가동 및 관리 요구사항.* 훈련된 작동자는 본 조항의 요구사항과 시설 가동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동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작업의 경우, 제조업체의 권고사항에 따라 구성요소를 가동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A) 대기국은 가동 및 관리 점검목록을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점검목록에는 각 작업과 관리 내용 및 수행일이 기록되어야 한다. 가동 및 관리 점검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냉각 콘덴서는 측관 하류인 배출구쪽 공기-증기 배기류 온도가 45°F(7.2°C) 이하가 될 때까지 배기 가스가 재순환되도록 가동하여야 한다.
      - i. 냉각 콘덴서는 최저 온도 범위가 0°F(-18°C)에서 150°F(66°C)에 이르는 눈금식 또는 디지털식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온도계는 배출구 증기류인 콘덴서 측관 하류의 온도를 측정하고, 작동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

2. 냉각 콘덴서 이외의 일차 제어 시스템은 기계의 문을 열기 전, 건조 사이클이 끝날 때 드럼 안의 퍼크 농도가 8,600ppmv 이하가 될 때까지 배기 가스가 재순환되도록 가동하여야 한다.
3. 일차 제어 시스템 또는 이차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증기 흡착기는 제조업체의 최적 흡착 권고사항을 토대로 배기 가스가 대기국이 정한 온도에서 재순환되도록 가동하여야 한다. 이런 증기 흡착기는 통상적인 가동이나 탈착 과정에서 퍼크 증기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요구사항을 비롯해, 대기국이 시설 가동 허가증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탈착되어야 한다.
4. 카트리지 필터와 흡착 카트리지 필터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i. 처분 전 카트리지 필터는 24시간, 흡착 카트리지 필터는 48시간 이하 동안 필터 하우스 내에서 배수한다. 이후 퍼크의 양을 더욱 줄이기 위해 필터가 별도의 장치로 이송되는 경우, 이 같은 처리법은 배출가스가 대기 중이나 작업실로 방출되지 않도록 모든 증기를 일차 제어 시스템으로 돌리는 시스템에서 행하여야 한다. 또는
  - ii. 필터에 있는 퍼크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밀봉된 필터 하우스 내에서 건조, 해체, 살포 또는 달리 처리한다.
5. 증류기와 떡 쿡커는 용량의 75% 또는 제조업체가 권고한 다른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증류기와 떡 쿡커는 비우거나 청소하기 전에 100°F(38°C) 이하로 식혀야 한다.
6. 단추받이와 린트받이는 근무일마다 청소하고 파손 부위를 점검하여야 하며 린트는 단단히 밀봉된 용기에 넣어야 한다.

7. 시설 소유주/작동자는 여분의 투입구용 개스킷 세트, 증류기, 린트 받이, 단추받이, 물분리기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설 소유주/작동자는 여분의 린트 필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퍼크가 대기(大氣) 중이나 작업실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의 모든 부분은 적절한 작업과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한다.
  10. 폐수처리기는 액체 퍼크나 눈에 보이는 유체가 증발하지 않도록 한 가운데 가동하여야 한다.
  11. 통합 이차 제어 기계에 있는 탄소 흡착기는 비접촉 스팀 작업 또는 핫에어 스트리핑 작업용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지시사항에 따라 또는 최소한 매주, 어느 쪽이든 더 자주 하는 대로 해체 또는 탈착 되어야 한다.
- (3) 누출 점검 및 수리 요구사항. 훈련된 작동자는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의 증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대기국은 누출 인스펙션 점검목록을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훈련된 작동자는 각 구성요소의 상태를 점검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A) 주간 누출 점검.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은 다음 기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누수누유 및 증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할로젠 탄화수소 감지기 또는
    2. 휴대용 가스 분석기 또는 대기국이 승인한 대안적 방법.
  - (B) 연간 누출 점검.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은 50ppmv의 퍼크에서 오차 범위 10% 미만으로 계량적 결과를 보여주는 휴대용 감지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일년에 한 번 누수누유 및 증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C) 작동자가 누수누유 또는 증기 누출을 탐지한 경우 이를 점검목록에 기록하고 본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누출 부위가 감지 당시에 수리되지 않으면, 누출되는 구성요소는 대기국 검사관이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표시하거나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D) 대기국이 누수누유 또는 증기 누출을 검출하였는데 점검목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의 누출되는 구성요소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본 조항 위반이 된다. 집행상의 목적을 위하여, 대기국은 A RB 검사법 21(Test Method 21)에 따라 휴대용 분석기로 퍼크 농도를 측정하여 증기 누출이 존재함을 확인하여야 한다(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17 제94124조).

(E) 모든 누수누유 또는 증기 누출은 감지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되 정부규정집(Government Code of Regulation) 제6700조 및 이하에 규정된 휴일은 예외이다.

1. 시설에 수리용 부품이 없는 경우, 그러한 누출을 감지한 다음 영업일 안에 부품을 주문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리 부품은 수령 후 2영업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 후 7일째 영업일이 끝날 때까지 누출을 수리하지 않은 시설은 해당 누출이 수리될 때까지 대기국으로부터 누출 수리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가동하여서는 안된다.

2. 대기국은 다음을 확인하는 경우, 3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회에 한해 누출 수리를 연장해 줄 수 있다.

i. 누출 수리 지연은 시설측의 조치로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ii. 시설은 타당한 예방조치를 취하였고 수리를 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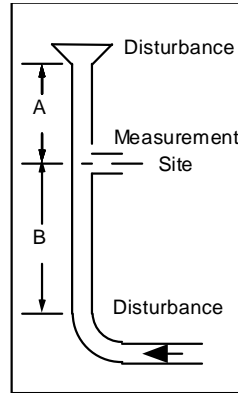
iii. 누출은 시설 인근의 TAC 노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iv. 시설은 본 조항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준수한 전례가 있다.

(4) **연간 드럼 농도 점검.** 2008년 7월 1일부로, 각 시설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연간 드럼 농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표본추출 포트를 탄소 베드의 배관과 상류, 하류에 설치한다. 표본추출 포트는 가능하면 파이프 안의 굴곡부, 확장부, 수축부, 변화부 같이 흐름에 동요가 생기는 곳에서부터 배관의 수직된 부위에 최소한 6군데의 배관

또는 덕트 하류부(아래 그림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 및 2군데의 배관 또는 덕트 상류부(아래 그림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치시킨다.



- (B) 표본추출 포트는 최소한 직경의 ¼인치이다. 각 포트는 Swagelok® 수나사 또는 그와 동등한 것, ⅜ 인치 내셔널 파이프 스레드(NPT), ⅜ 인치 튜브 피팅, ⅜ 인치 튜브 플러그 등을 갖춘다.
- (C) 50ppmv의 퍼크에서 오차 범위 10% 미만으로 계량적 결과를 보여주는 휴대용 퍼크 감지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일년에 한 번 건조 사이클이 끝날 때 표본추출 포트에서 퍼크 농도를 측정한다.
- (D) 드럼의 퍼크 농도는 탄소 베드의 표본추출 포트 상류의 수치로 대표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창업 기간 중 새로운 통합 이차 제어 기계의 경우 건조 사이클이 끝날 때 500ppmv 미만(건축허가 아래). 그리고
  2. 창업 기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가동시 건조 사이클이 끝날 때 1,000 ppmv 미만.
- (E) 탄소 베드의 표본추출 포트 하류에서 퍼크 농도는 이차 제어 시스템이 가동 중일 때 100ppmv 미만이어야 한다.



**(j) 기록유지 요구사항.**

- (1) 다음 기록은 모든 시설에서 최소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A) 폐수 처리 방법. 폐수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처리기 제조사와 모델을 기록한다.
  - (B) 갤런으로 표시된 드라이클리닝 솔벤트 구매 및 배달 영수증.
  - (C) 부가형 또는 통합 이차 제어 기계 작업의 경우 각 재생 작업의 시작 시간과 마친 시간 및 냉각된 공기의 온도.
  - (D) 2008년 7월 1일부로, 부가형 또는 통합 이차 제어 기계의 경우 건조 사이클이 끝날 때 이차 제어 시스템의 상류와 하류에 위치한 표본추출 포트에서 매년 측정된 퍼크 농도.
  - (E) (i)(2)(A)항이 요구하는 가동 및 관리 점검목록과 (i)(3)항이 요구하는 완료된 누출 인스펙션 점검목록.
  - (F) 감지 당시 수리되지 않은 누수누유 또는 증기 누출의 경우, 수리를 기다리는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의 누출되는 구성요소와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기록. 이 기록에는 수리용 부품 주문 시기 및/또는 서비스 요청 시기를 보여주는 주문서 또는 기타 서면 기록의 사본이 포함된다. 그리고
  - (G) 시설의 강화된 환기 시스템의 종류(예: 국소 환기 시스템, 증기 부분 차단실 또는 증기 완전 차단실).
- (2)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업체의 작동 매뉴얼은 장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3) 각 훈련된 작동자의 환경 훈련 프로그램 수료증 원본은 재직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료증 사본은 해당인이 시설에서 사직한 시점에서 2년간 더 보관하여야 한다.
- (4) 모든 기록 또는 그 사본은 영어본이어야 하며 시설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

**(k) 보고 요구사항.**

- (1) 각 시설의 소유주 또는 작동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민감한 수용체와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사업장까지의 추산 거리.
  - (B) 각 훈련된 작동자의 환경 훈련 프로그램 수료증 사본.
  - (C) 세탁한 세탁물의 총 파운드.
  - (D) 보고 기간에 모든 솔벤트 첨가물용으로 구입한 솔벤트의 갤런.
  - (E)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제조일.
  - (F) 시설의 강화된 환기 시스템의 종류(예: 국소 환기 시스템, 증기 부분 차단실 또는 증기 완전 차단실).
  - (G) 폐수 처리 방법. 폐수처리기를 사용하는 경우 처리기 제조사와 모델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각 시설의 소유주 또는 작동자는 이 연간 보고서를 매년 2월 2일까지 대기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기국은 시설에 관한 현재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본 조항의 (1)항의 근거 자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 (4) 대기국은 허가된 시설의 연간 퍼크 구입 현황을 매년 4월 2일까지 또는 대기국과 ARB가 합의한 다른 날짜까지 ARB에 보고하여야 한다.

**(l) 이차 제어 시스템의 검사와 인증.**

- (1) *검사 프로그램과 범위.*
  - (A) (h)항의 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어 시스템당 하나의 검사 프로그램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 (B) 검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는 검사를 받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제어 시스템, 검사 절차, 검사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검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C) 제어 시스템별 각 검사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한 3회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D) 단일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검사가 단일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E) 이차 제어 시스템의 드럼 용량과 탄소 중량이 다양한 특정 드라이클리닝 기계 모델을 검사할 때, 검사는 최소한 탄소 중량에 대한 드럼 용량의 최대 비율을 산출해 실시한다.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드럼/탄소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드럼/탄소 비율} = \frac{\text{기계의 드럼 용량(파운드)}}{\text{흡착기 내 탄소 중량(파운드)}}$$

- (F) 검사 결과는 다른 제조사/모델 또는 재구성된 대체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검사 조건.* 검사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가동 조건에서 실시된다.

- (A) 각 검사는 탄소 재생 전 제조업체가 권고하는 로드수의 80%를 실행한 후 한 로드의 세탁물을 세탁하는 동안 수행된다.
  1. 기계의 드럼은 검사할 때마다 용량의 85% 이하로 세탁물을 채운다. 세탁할 로드의 최소한 70%는 모직 또는 속을 채워 흡수력이 좋은 세탁물로 구성해야 한다.
  2. 검사할 때마다 세탁물의 중량을 기록한다.
- (B) 통합 이차 제어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차 제어 시스템이 있는 페루프형 기계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

(3) 검사 방법.

- (A) 드라이클리닝 기계 드럼 내부의 공기 온도는 이차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에 비롯해 전체 건조 사이클 내내 계속 측정하고 기록한다.
- (B) 표본추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표본추출은 건조 사이클이 끝날 때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마친다.
  - 2. 표본추출은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투입구를 열어 이탈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완료한다.
- (C) 드라이클리닝 기계 드럼 내 퍼크 농도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1. 표본추출 포트와 밸브를 적절히 위치시켜 드럼 내부 또는 린트 필터 하우스에서 표본을 채취한다. 표본추출 포트를 외경 ¼인치짜리 테플론 튜빙(Teflon tubing)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에 연결한다. 표본추출 펌프에는 테플론 격막을 장착한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는 ARB 방법 422(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17 제94132조) 또는 NIOSH 방법 1003(NIOSH분석방법매뉴얼, 미연방 보건후생부(Health and Human Services), 1987년 8월 15일)에 따라 퍼크 농도를 측정한다.
  - 2. 표본추출 포트와 밸브를 적절히 위치시켜 드럼 내부 또는 린트 필터 하우스에서 표본을 채취한다. 표본추출 포트를 외경 ¼인치짜리 테플론 튜빙으로 테들러 백(Tedlar bag)에 연결한다. 표본추출 펌프에는 테플론 격막을 장착한다. 표본추출한 공기 중의 퍼크 농도를 ARB 방법 422(캘리포니아제규정집 표제17 제94132조) 또는 NIOSH 방법 1003(NIOSH분석방법매뉴얼, 미연방 보건후생부, 1987년 8월 15일)에 따라 표본추출 24시간 이내에 측정한다. 표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실험실과 계약한 경우, ARB 방법 422 또는 NIOSH 방법 1003에 실린 증거물 보존 완전성 절차를 따른다.

(D) 대안적 검사 방법은 공기자원협회의 집행관에 의하여 용인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인증 절차.

(A) 제조업체는 공기자원협회에 다음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어 장치를 비롯한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설명.
2. 쉬운 영어로 쓰인 작동 매뉴얼 사본.
3. 인증을 요청하는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전면과 후면 사진.
4. 자세한 검사 결과 요약은 비롯해 (I)(1)(B)항이 요구하는 검사 계획 . 그리고
5. 공기자원협회가 인증 요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

(m) 폐수 처리.

(1) 2008년 7월 1일부로, 폐수는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송업자가 실어가거나 폐수처리기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처리기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공기, 물, 하수 시스템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 환경으로 유출되는 솔벤트 배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완비된 기기.

(B) 폐수는 대기국이 정한 대로 해당 시설에 적합한 처리 용량을 지닌 폐수처리기에 적치한다. 그리고

(C) 폐수처리기는 분리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분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1. 솔벤트/물 분리 침전실.
2. 폐수가 순환처리 되는 탄소 또는 다른 종류의 흡착 필터 시스템.

**(n) 발수 처리 작업.**

- (1) 펄크 발수 처리 용제로 처리될 모든 세탁물이 폐루프형 기계로 처리되지 않는 한, 아무도 발수 처리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o) 분리가능성.**

본 조항의 각부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조항의 일부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하다.

주(註): 인용 근거: 보건안전법 제39600, 39601, 39650, 39655, 39656, 39658, 39659, 39665, 및39666조; 미국연방법전 표제 42 제7412조 및 제7416조.

참고 조항: 보건안전법 제39650, 39655, 39656, 39658, 39659 및 39666조; 미국연방법전 표제 42, 제7412조 및 제7414조; 연방규정집 표제 40, 제63.320, 63.321, 63.323 및 63.324조.